

의안번호	2204665
의 퇴 인	임광현 의원
회 답 일	2024. 10. 14.
추 계 번호	24A4313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대하여 「통계법」 제9조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20백만원(연평균 4백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통계품질진단 실시	20	-	-	-	-	20	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2조의2 (세입예산의 추계)	제32조의2 ③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통계법」 제9조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에 준하는 품질진단 및 관리를 받아야 한다.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32조의2(세입예산의 추계)	○	—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라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포함되는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기존 업무수행 범위 내에서 추가 재정소요 없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제
 - 개정안에서 규정한 포함 항목은 ① 세입추계 모형, ② 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, ③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, ④ 전년도 세수오차율 및 상반기 세수오차율, ⑤ 세입추계 개선사항임
 - 이중 ②~③, ⑤는 현행법에 기 규정된 사항이며,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항목은 ① 세입추계 모형과 ④ 전년도 세수오차율 및 상반기 세수오차율로 동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기존 업무수행 범위 내에서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
- 개정안 부칙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발생할 것으로 전제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대하여 「통계법」 제9조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은 최근 5년간 실시된 정기통계품질진단 평균 소요비용(2천만원)이 될 것으로 가정
 - 최근 5년간 「통계법」 제9조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 실적에 따르면 1건당 소요 예산은 평균 2천만원 수준으로 조사됨

[표 2] 최근 5년간 정기통계품질진단 실적(통계청)

(단위: 건, 억원)

연도	정기통계품질진단 실시건수	소요예산	1건당 소요예산
2019	120	16.13	0.1
2020	73	14.04	0.2
2021	68	14.60	0.2
2022	70	21.65	0.3
2023	67	21.65	0.3
평균	80	17.61	0.2

주: 해당 연도에 「통계법」 제9조에 따라 진단을 완료하고, 해당 기관에 통보한 건수 및 소요예산 기준임
 자료: 통계청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

-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주기는 ‘10년의 범위내에서 주기적 진단’하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향후 5년(2025년~2029년) 중 2025년 1차례 발생할 것으로 예상

□ 개정안에 따라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대하여 「통계법」 제9조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2천만원(연평균 4백만원)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
[표 3] 개정안의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통계품질진단 실시	20	—	—	—	—	20	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국회예산정책처	추계세제총괄과
과장	권아영
추계세제분석관	태정립
연락처	02-6788-4652
	jitae@nabo.go.kr
